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 상품특징: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또는 증서), 예금상품계약서,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실명의 개인 (다계좌 가능하나 합산하여 5억원 이내) * 공동명의 불가
가	입	금	액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상	품	유	형	거치식예금
계	약	기	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월단위)
거	래	방	법	신규 : 영업점, 비대면(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해지 : 영업점, 비대면(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계	약 해	지 방	법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단,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 수협은행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만기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해지하여 세후원리금을 고객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계좌의 만기가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 만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기 본 금 리 리 (2025.04.30 기준) • 신규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 적용 (단위: 세금공제 전 기준, 연, %) 기 간 기본금리 비고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2.45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대 0.35%p의 우대금리 제공

(단위 : 세금공제 전 기준, 연%p)

			(E) 1 · MESM E 7E, E/00/
구 분	우대금리	확정시기	적용기준
해양플라스틱 감축 서약	0.1	신규시	이 예금 신규시 해양쓰레기 감축 서약 ^{주1)}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15	만기 해지시	이 예금 신규이후 만기해지시까지 봉사활동 또는 SNS를 통해'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상품홍보 후 인증샷 등 제시 ^{주2)}
입 출금통 장 최초 신규	0.1	만기 해지시	이 예금 신규일에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을 최초로 신규
자동이체 출금 실적	0.1	만기 해지시	이 예금 신규이후 만기해지시까지 수협은행 본인 입출금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실적중 하나가 월1회이상 발생한 월수가 예금 계약기 간의 1/2이상 ^{주3)} 인 경우 가. 수협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당행 펀드 또 는 적금 납입금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실적 나. 수협체크카드 승인실적 ^{주4)}

주1) 별도 서식 징구

주2) 봉사활동은 일상생활속 간단한 쓰레기수거 등도 포함하며, SNS를 통한 상품홍보시에는 키워드(또는 해시태그)에 은행명 및 상품명 필수(예시:#수협은행#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

주3) 1개월 미만은 절사

주4) 취소거래시 실적 제외

제 휴 금 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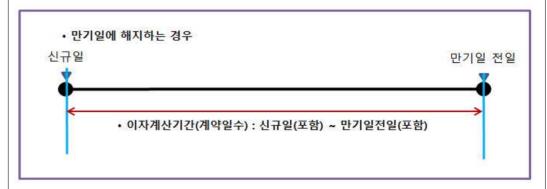
우

대

금

- 만기이자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약정)금리*로 계신한 금액
 - * 만기(약정)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이자계산 산식 : 원금(신규금액) × 만기(약정)금리 × 계약일수(납입일~만기전일)/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만기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만기후 금리 적용 ※ 만기후 경과기간: 만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단위 : 세금공제 전 기준, 연, %)

만 기 후 금 리 (2025.04.30 기준)

		(27 • 710	0/11 12 / 11	·, ·, /0/
기 간		금 리	비	고
만기후 1개월 이	ᄺ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 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½		
만기후 1개월 초	.과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		
~ 3개월 이내		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¼		
만기후 3개월 초	.과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적용					
	(단위 : 세금공제 전 기준, 연%)					
	기 간 금 리 최저금리 비 고					
	1개월미만 0.1 - 1개월미만 0.1 - 1개월이상~3개월미만 0.1 -					
	3개월이상~6개월미만 기본금리×3/약정기간×55% 0.10					
중 도 해 지 금 리	6개월이상~10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55% 0.10					
(2025.04.30 기준)	10개월이상~11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 0.10 11개월이상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 0.10					
	※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					
	* 경과월수 :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약정기간 :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 계산방법(예시)					
	약정금리					
 중 도 해 지 이 자	기본금리 X 경과월수 / 약정기간 X 90%					
	기본금라 X 경과월수 / 약정기간 × 80%					
산 출 근 거						
	기본금리 X 3 / 약정기간 × 55% 기본금리 X 경과월수 / 약정기간 X					
	0.1%					
	이 그리오 것으로 조트레기계의 사 게이의 사 드에 따르 조트레기이기르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를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가 아닙니다 .					
OL 7F 7L 그 바 시	만기일시지급식 : 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이 자 지 급 방 식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계 · 제 휴서 비 스	• 해당사항 없음					
	., 5 , 6 , 2, 2					
기 금 출 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 부담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예금 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해양환경공단 등에 지정 기탁					
에그가비중어비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예 금 자 보 호 여 부	■ 1인당 최고 5천만원 ■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11 21 =1 Eu						
세 제 혜 택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야트 미 타브게고	• 양 도 :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 담보제공 : 가능					
	• 만기해지 포함 3회 가능					
일 부 해 지						
	(단, 만기 전 일부해지금액에 대해 중도해지금리 적용, 잔액은 최저 기입금액 이상 유지 필수)					
일 부 해 지 계약기간연장	(단, 만기 전 일부해지금액에 대해 중도해지금리 적용, 잔액은 최저 기입금액 이상 유지 필수)					

자 동 재 예 치	불가
무 통 장 거 래	가능
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	• 계좌에 <u>압류^{주1}</u> , <u>기압류^{주2}</u> , <u>질권설정^{주3}</u>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 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주4)} 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 법 계 약 해 지 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 료 열 람 요 구 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

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주1)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2)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 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3)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주4)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